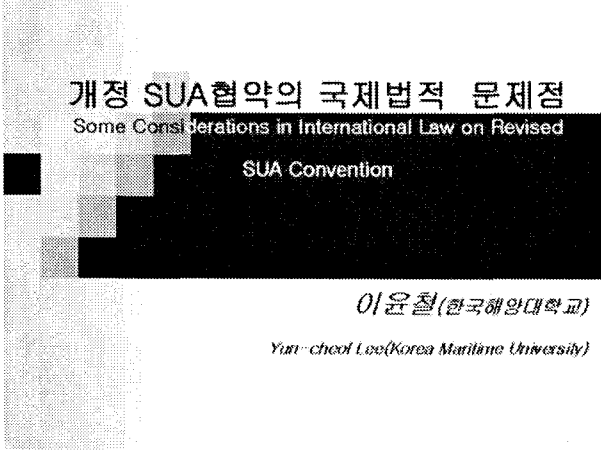


개정 SUA 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

이윤철*

Some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Law on Revised SUA Convention

Yun-Cheol Lee+



- 1. 시작하며
- 2. SUA협약의 개정과 향후 일정
 - (1) 2001. 9. 11 테러와 새로운 테러리즘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 대두
 - 항공기(해:9.11테러), 선박, 대량살상무기(WMD)의 테러도구의 이용 가능성.
 -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과 WMD의 비확산(반테러와 비확산).
 - (2) SUA협약 개정논의 및 채택
 - 1988년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(SUA) 로마에서 채택.
 - 9.11테러 이후 IMO 제84차 LEG에서 SUA협약 개정논의.
 - 초기에는 선박 및 고정식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에 초점.
 - 나중에 WMD의 비확산을 위한 개정이 추가됨.
 - 2005. 10. 14. SUA협약 개정의정서 채택.

- (3) 개정SUA협약의 향후 일정
 - 개정 SUA협약은 플랫폼의정서는 2006. 2. 14부터 1년간 시행을 위해 IMO본부에서 개정함.
 - 현 SUA협약 당사국 중 12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면 그로부터 90일 후 발효.
 - 플랫폼의정서는 3개국의 비준 또는 수락하고 90일 경과 후 발효.

- 3. 개정 SUA협약의 주요내용
 - (1)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
 - 현행 SUA협약상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범죄(new offences)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(제3조 bis), 즉
 - 선박을 이용하여 인명살상, 재산파괴 및 이를 어기하는 폭발물, 방사성물질, BCN무기를 사용하는 행위,
 - 선박으로부터 유독물질, 유류, 액화천연가스 등을 방출하는 행위,
 -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법상 금지된 BCN무기, 원료물질, 특수분말물질, 특수분말물질의 가공, 사용, 생산을 위하여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, 물자, 어주용도물자 등을 운송하는 행위.

- (2) 혐의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
 - SUA협약상 범죄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개정 SUA협약 당사국의 법집행기관은 승선 및 검색 가능.
 - 단, 승선 및 검색을 위해서는 승선 및 검색국가가 혐의선박의 기국에게 승선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국은 요청을 수락, 거부, 공동검색 또는 기국에 의한 자체검색 등 4가지 조치 중 1개를 취하여야 함.
 - 협약당사국은 개정 SUA협약의 시행 또는 비준, 수락 또는 가입 시 국적선박에 대하여 승선, 검색에 대한 요청을 사전승인을 IMO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음(opt-in system).

- (4) 플랫폼 의정서의 개정
 - 개정된 SUA협약의 내용은 대륙붕상 고정식플랫폼에도 준용.
 -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독물질 등을 방출하는 행위, 플랫폼을 이용하여 BCN이나 핵물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플랫폼의정서에 의하여 처벌가능.

- (3)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등 협약이행체제 강화
 - SUA협약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간 국제공조체제를 강화.
 - 국제테러범죄자의 해상운송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, 공범 및 법외처벌규정 신설 등 협약이행체제 강화.

+ 이윤철(한국해양대학교)

4. 개정 SUA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

(1) 개정주체의 적절성

- 1988년 SUA협약을 IMO해사협약으로 채택 및 개정을 IMO LEG가 주도.
- 2001년 9.11 테러 이후 새로운 양상의 해상테러에 대처하기 위하여 LEG에서 개정논의 시작(2002년).
- 2003년부터 WMD에 관한 비확산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논의주체가 IMO보다는 UN차원의 안보관련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.
- UN차원에서 타협할 경우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타결이 어려우며, IMO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IMO에서 계속 논의 및 타결.

(3) 2중용도물자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성

- 개정 SUA협약 제3조 b(2)(중용도물자) : BCN무기의 제조, 설계 등에 중대하게 기여하는 물자, 재료, 기술, 소프트웨어 등의 해상운송을 처벌가능한 범죄로 규정.
- 범죄성립요건 : 2중용도물자 등이 BCN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를 갖고 2중용도물자 등을 운송.
- "그러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의도를 갖고", "BCN무기의 제조 및 설계 등에 중대하게 기여하는 물자 등"에 대한 개념이 주관적이고,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, 범죄성상의 모호성으로 인한 처벌부성요건이 분명치 않음.
- 또한 이를 규정의 무리한 범주화로 인해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에 위축시켜 국제경쟁에 큰 피해를 주고, 특히 해운국인 우리나라에 더욱 불리함.

5. 맺으며

- 새로운 국제법질서에서의 해상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SUA협약의 개정에 동행.
- 개정 SUA협약 시행으로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해운경대국인 우리나라 해운산업 위축 예방.
- 개정 SUA협약의 서명 및 비준에 대비한 국내법제도 연립외 검토, 정비.

(2) WMD 및 관련물질운송의 형사범죄 인정여부

- 국제법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문 국제협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위반되어야 함.
-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조항 제19조(국제범죄) : 국제공동체의 기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극히 본질적인 의무가 훼손되어 위반하면 중범죄가 된다고 국제공동체 전체가 판단하는 경우로서, 침략행위, 무력에 의한 식민지 지배, 노예제도, 집단살해, 인종학살, 대가전이나 해상에 대한 대량의 오염행위.
- 개정 SUA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(NPT: Non-proliferation Treaty), 화학무기금지협정(CWC: Chemical Weapons Convention), 생물학무기금지협정(BWC: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) 등 종래 비확산 국제체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NPT 등을 국제형사법규화 함.
- 개정 SUA협약에서 NBC무기관련 물자와 2중용도물자의 단순운송행위 기종의 국제법적행위와 같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.
- 특히, 이들 물자에 대한 단순한 운송행위를 한 개인에게 국제법죄로 간주하여 재판 및 처벌을 하여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요망함.

(4) 승선 및 검색제도의 유엔해양법협약상 문제점

- 개정 SUA협약은 선박운항관련 국가관할권 이외의 해역(배타적경제수역, 공해)에서 SUA협약상 위반행위선박에 대해 승선 및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.
- 이는 국제해양법상 공해자유의 원칙(UNCLOS 제87조 제1항)과 기국의 배타적관할권(UNCLOS 제94조 제1항)에 정면으로 배치.
- 기국을 선박의 승선 및 검색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자국선박에 대한 관할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, 포괄적 사전승인제도로 인해 여전히 UNCLOS상의 기국의 권한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.
- 정선 및 검색을 한 후 혐의가 없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지만, 정선 및 검색을 행한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.